

- 남포교회 청년3부 회칙 -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 청년3부라 칭한다.

제2조(소재) 본회는 남포교회 내에 둔다.

제3조(회기) 본회는 회기가 시작되는 그 해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를 회기로 한다.

제4조(목적) 본회는 성경에 입각한 전통적이고 개혁적인 신앙 노선을 따른다. 본회의 회원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쓰며,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한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며,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제2장 회 원

제5조(구성)

- 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청년 3부 모임에 참여하는 만 31세 이상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으로 구성한다.
- ② 특별한 사정 등으로 본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는 임원회 및 담당 교역자의 허가로 회원이 될 수 있다.

제6조(자격)

- 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으로 한다.
 1. 본회에 등록 후 정해진 새가족 교육을 마친 자.
 2. 준회원으로로서 연속 4주 이상 청년 모임에 참석한자.
 3. 청년 2부의 정회원이었던 자로서, 만 31세에 해당하여 청년 3부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자.
- ②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준회원으로 한다.
 1. 본회에 등록 후 정해진 새가족 교육을 마치지 아니한 자.
 2. 청년 모임에 연속 3개월 이상 불참한 정회원
- ③ 임원 및 부장이 준회원으로 되면 그 자격이 상실된다.

제7조(권리)

- ① 정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을 가지며, 다만 임원 및 부장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은 정회원 중 등반 후 1년 이상 된 세례 신자만이 갖는다.
- ② 준회원은 발언권만을 갖는다.

제8조(의무)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기타 본 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한다.

제3장 조 직

제9조(임원) 본 회의 임원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회장(1인) :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.
2. 총무(1인) : 각 부서의 관장과 행정에 관한 전반 사항을 담당하고,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.
3. 서기(1인) : 본 회의 사무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4. 회계(1인) : 본 회의 재정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.
5. 부서기(1인) : 서기업무 보조와 서기 부재 시 서기의 역할을 대행한다.
6. 부회계(1인) : 회계업무 보조와 회계 부재 시 회계의 역할을 대행한다.

제10조(부서) 본 회의 부서와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찬양부 : 본 회의 찬양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2. 새가족부 : 본 회의 신입회원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3. 문서부 : 본 회의 회지 발간 및 문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4. 친교부 : 본 회의 친교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1조(부서의 구성)

- ① 각 부서는 부장 1인을 둔다.
- ② 본 회에 출석하는 회원이면 누구나 원하는 부서에 소속될 수 있으며, 회기를 기준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2조(조) 본 회의 회원은 모두 조에 소속되며, 각 조별 활동은 성경공부와 회원 상호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.

제13조(조의 구성) 조의 구성과 관련한 직책은 다음과 같다.

1. 조장총무 : 조 편성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, 조장단을 대표하여 임부장 회의에 참석한다.
2. 조장 : 조장은 성경공부 및 조모임을 인도한다.

제14조(조장단의 선임)

- ① 조장총무는 조장단을 대표하며 담당 교역자가 선임한다.
- ② 조장단은 등반 이후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으로서 남포교회 성경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담당 교역자가 인정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.

제15조(소모임)

- 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서 학습과 친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을 둘 수 있다.
- ② 소모임은 임원회의 검토와 담당교역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③ 소모임은 본 회의 어떤 모임보다도 우선될 수 없으며, 임원회와 담당교역자의 협의 하에 운영을 제한 받을 수 있다.

제16조(온라인 커뮤니티)

- ① 회원 상호간의 교제 및 친목도모, 기타 본 회에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온라인 커뮤니티의 운영은 회장이 대표하며, 관련된 세부규칙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
제4장 선 거

제17조(선거)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구두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단, 준회원은 후보추천을 할 수 없다.

제18조(회장 선거)

- ① 본 회의 회장은 출석한 선거권자의 2/3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한다.
- ② 2/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, 이때의 후보자는 1차 투표에서의 상위 2위까지의 득표자로 제한한다.
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한다.
- ③ 2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하며,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두 후보의 표가 동수인 경우 4차 투표를 실시한다.

제19조(총무, 서기, 회계 선거)

- ① 본 회의 총무, 서기, 회계는 출석한 선거권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한다.
- ②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, 이때의 후보자는 1차 투표에서의 상위 2위까지의 득표자로 제한한다. 2차 투표에서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두 후보의 표가 동수인 경우 3차 투표를 실시한다.

제20조(부서기, 부회계 선임) 본 회의 부서기, 부회계는 전 2조의 선출된 임원이 선임

하며, 담당 교역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

제21조(부장의 선출) 부장은 각 부서별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.

제22조(연임 및 중임) 본 회의 임원 및 부장은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. 단, 본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.

제23조(보선) 본 회의 임원 및 부장이 결원 되었을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21조의 방식으로 선출하고,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 단,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일 때는 임원 및 부장의 결원이 생겨도 보선하지 않는다.

제5장 회 의

제24조(총회)

- ① 본 회의 정기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며, 매 회기년의 4분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장 유고시, 개회 정족수 미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연기할 수 있다.
- ② 재적회원은 정회원으로 하며, 준회원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.
- ③ 정기총회에서는 연간 재정보고, 연간 사업보고, 회칙개정, 신임원 선거 및 주요안건을 결정한다.

제25조(임시총회) 결원된 임원의 보선, 회칙개정 및 본 회의 중요사항 결의시 회장 또는 재적인원 1/5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,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된다.

제26조(임부장회의)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. 임부장회는 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, 부서기, 부회계, 조장총무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된다.

제6장 재 정

제27조(수입) 본 회의 수입은 교회의 재정 보조, 회원의 회비 및 특별 찬조금으로 한다.

제28조(재정 감사) 본 회의 재정 감사는 교회의 규칙을 따른다.

제7장 회칙 개정

제29조(발의) 회칙 개정의 발의는 정회원 누구나 할 수 있다.

제30조(결의) 회칙 개정에 대한 결의는 총회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 (2014. 1. 26)

제1조(발효) 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.

제2조(보칙) 본 회칙이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사항은 교단 헌법 및 통상 회칙에 준한다.

부 칙 (2016. 1. 24)

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.

부 칙 (2017. 1. 22)

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.

부 칙 (2018. 1. 28)

본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된다.

-대한예수교장로회 남포교회 청년 3부-